

##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

법률 조항	<b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</b>
법률 내용	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</li> <li>-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</li> <li>-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</li> </ul> </li> <li>○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(보안업무규정 제24조)</li> <li>○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</li> <li>○ 공판 개시전 소송에 관한 정보 (형사소송법 제47조)</li> <li>○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·치료 등 관련 정보 (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)</li> <li>○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·치료 등 관련 정보 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)</li> <li>○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, 이용자 등 관련 정보 (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)</li> <li>○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(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공직자 윤리법 제14조, 제14조3)</li> <li>○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(통계법 제33조)</li> <li>○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·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(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)</li> <li>○ 감사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, 제29조)</li> <li>○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·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</li> </ul>
법률 조항	<b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</b>
법률 내용	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기준	○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나 사회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주요	○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

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비군 및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(군사훈련, 국가재난훈련)</li> <li>○ 비밀취급인가자 명단, 암호자재현황 등의 비밀문서</li> <li>○ 연구사업 수행과정 또는 연구결과로 생산되는 과학데이터와 정책자료 중에서 외교관계상 국가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</li> <li>○ 정보화 관련 자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</li> <li>-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</li> <li>-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</li> <li>- 각종 서버 운영 자료</li> <li>- 전산망(무선랜 포함) 구축 관련 자료</li> </ul> </li> <li>○ 그밖에 개별적·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li> </ul>
법률 조항	<b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</b>
법률 내용	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</li> <li>○ 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</li> </ul>
주요 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법·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 및 비공개 대상 결과보고서</li> <li>○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(동·부동산 현황 내역,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 등)</li> <li>○ 위험시설이나 장비의 위치·설계도·구조경비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사항 (청사 방호계획, 당직근무자 명단 등)</li> <li>○ 그밖에 개별적·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li> </ul>
법률 조항	<b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</b>
법률 내용	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정한 직무 수행이 곤란</li> <li>- 형사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우려</li> <li>-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</li> </ul> </li> </ul>
주요 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정소송 진행 상황,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</li> </ul> </li> <li>○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적·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</li> </ul>

	<p>또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기관 수사 협조사항</li> <li>○ 기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</li> <li>○ 그밖에 개별적·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재판, 범죄의 예방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</li> </ul>
<p>법률 조항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</b></p>
<p>법률 내용</p>	<p>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</p>
<p>기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초안,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기획안,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</li> </ul>
<p>주요 사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별감사 및 조사, 직무감찰 계획 등의 대상기관, 시기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실현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li> <li>○ 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 업무(국정감사, 종합감사, 부분감사, 감사원감사, 민원사무 감사, 보안감사 등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사(수감)결과 보고 관련 개인 인적사항 및 처분사항</li> <li>- 비위·진정·사실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</li> <li>- 범죄수사·처분서류</li> <li>- 시설, 기관 현지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어려운 사항(관사 현황 등)</li> <li>- 문답서, 확인서, 감사결과 보고서</li> <li>- 미확정 및 내부 검토자료</li> <li>- 기타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 및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평정·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·협의·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</li> <li>○ 입찰예정가격 및 예정가격을 예단할 수 있는 단가 등 자료(견적서, 원가계산 등)</li> <li>○ 입찰예정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</li> <li>- 유자격자명부 및 입찰자의 경영내용,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</li> <li>○ 설계·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평정·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·협의·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</li> <li>○ 기타 공정한 입찰업무 저해 및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</li> <li>○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·지표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</li> <li>○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</li> <li>○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가관련 위원별 평가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, 구체적인 연구계획, 연구방법, 로 데이터(raw data), 연구의 중단 단계에서 생성된 자료와 결과, 지식재산권 출원과 공개 전인 연구 결과 등 공개될 경우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고, 국민에게 오해를 주거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</li> <li>○ 정부 및 민간기관 등과 협동·위탁계약 체결 시 외부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정보</li> <li>○ 연구사업의 선정·수행·결과 등과 관련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</li> </ul>
<p>법률 조항</p>	<p><b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</b></p>
<p>법률 내용</p>	<p>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
<p>기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의 정신, 신체, 재산, 사회적 지위, 신분 등에 관한 사실, 판단,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(단,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)</li> <li>○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 인적사항(주소, 전화번호,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, 출생지, 국적, 본적 등)</li> <li>○ 가족에 관한 사항(호적, 주민등록, 가족 구성, 친족·혈족관계, 동거·별거, 이혼 등)</li> <li>○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정보(학교명, 입학·졸업년도, 재학기간, 학업성적, 퇴학·휴학·정학, 클럽·과외활동, 사회활동 등)</li> <li>○ 재산에 관한 정보(동산·부동산의 종류·가격, 채권·채무의 내역, 수입·지출에 관한 사항, 납세실적, 계좌번호 등)</li> <li>○ 건강에 관한 정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신에 관한 정보 : 장애명, 장애의 유무, 장애의 정도</li> <li>- 질병·부상에 관한 정보 : 질병명, 질병력, 질병의 원인 등</li> <li>- 검사·진료 등에 관한 정보 : 검사진료, 건강상담표, 검사명, 검사의 결과, 질병의 소</li> </ul> </li> </ul>

	<p>견, 간호 기록, 치료의 내용, 진료기록카드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그 외 건강상태 등에 관한 개인 정보 사항</li> <li>○ 개인의 재판 관련 소장 및 판결문, 행정심판 청구서 및 결정서 등에 기재된 정보</li> <li>○ 진정·탄원·정보공개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도 해당됨</li> <li>- 다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○ 개인별 급여 지급 내역 및 계좌번호</li> <li>○ 개인별 소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</li> <li>○ 직원의 채권·채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직원 관련 기록사항(대부금, 학자금대여, 보상금 등)</li> </ul> <p>※ 단, 다음의 정보는 개인의 정보임에도 공개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령의 규정에 의해 또는 관행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</li> <li>○ 공증, 자격 등에 관한 정보(토지등기부, 건물등기부에 기록된 사항,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사항, 지출보고서에 기록된 사항 등 그 외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보)</li> <li>○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인으로부터 임의로 제공된 정보(선거 공보에 등재하기 위하여 후보자로부터 제공된 사항)</li> <li>○ 개인이 자주적으로 공표한 정보(출판물에 기재된 저자명, 저자 경력 등)</li> <li>○ 본래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된 정보(수상자 명단, 부속기관 등의 위임명, 발령 후 인사 이동 명단 등)</li> <li>○ 사람의 생명, 건강,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</li> <li>○ 행정기관의 직원으로서 행위를 한 정보(공문서 발신자·수신자의 직위 및 성명,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담당관의 성명 등)</li> <li>○ 개인의 권리행사 및 권리구제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(대리자 포함)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</li> </ul>
<p>법률 조항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</b></p>
<p>법률 내용</p>	<p>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“이라 함)의 경영,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
<p>기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업상의 정보, 경영방침, 신용평가, 경리,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</li> <li>○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</li> </ul>
<p>주요 사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교법인, 각종 비영리(공익법인 포함)법인, 단체의 신용 및 경영 상태에 관한 정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교법인 및 비영리(공익법인 포함)법인 설립인가신청 정보</li> <li>- 재산(취득·처분포함)·예산·결산, 사업실적보고서, 채무현황, 은행계좌번호, 등</li> <li>- 법인·단체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항</li> </ul> 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인 직원의 채용 및 직원 수, 직원배치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- 법인 설립 및 해산, 법인이사회 회의록 및 임원 취·해임에 관한 중요사항</li> <li>- 법인·단체 등의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</li> <li>○ 공사·물품 등 계약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(단,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 현황은 공개)</li> <li>○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(단, 처분현황은 공개)</li> <li>○ 각종 용역(BTL 사업 포함)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기술, 신공법, 시공실적,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, 기술평가 결과 적격심사서류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</li> </ul> </li> <li>○ 기타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“이라 함)의 경영,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※ 단, 다음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와 관련한 정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해, 식중독, 전염병 발병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위법·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</li> </ul> </li> </ul>
법률 조항	<b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</b>
법률 내용	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기준	○ 투기·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
주요 사례	○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